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중국 사모채권 발행 개시

지난 5월 22일, 중국 상해거래소와 심천거래소는 「중소기업 사모채권 업무 시범방법」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국 내에서 비공개 방식으로 사모채권을 발행 및 양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 방법에서 가리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형태 기준규정에 대한 통지」의 기준에 부합되는,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기업과 금융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합니다.

동 방법에 따라 발행하는 사모채권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1) 발행인은 중국 내에 등록된 유한책임회사 또는 주식유한회사이어야 하고, (2) 발행 이자율이 동기 은행 대출기준 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3) 기한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에서는 사모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인의 순자산과 영업능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투자는 리스크가 비교적 크므로 투자자는 발행인이 공개한 정보를 근거로 자체적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토지를 방치할 경우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토지방치 비용 징수

지난 6월 7일, 국토자원부서에서 「토지방치에 대한 처리방법」(개정안)을 발표함에 따라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동 방법에 따르면, 국유건설용지 유상 사용계약에서 약정한 착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시·현급 국토자원부서는 토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방치비용을 징수하게 됩니다. 만약 만 2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 아니할 경우 시·현급 국토자원부서는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국유건설용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착공하였더라도 개발 면적이 반드시 개발하여야 하는 면적의 1/3에 미달하거나 기 투자한 금액이 총 투자액의 25%에 미달한 상태에서 1년 이상 개발을 중단하였을 경우 이 역시 토지를 방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여직원에 대한 노동보호 강화

지난 4월 8일, 국무원에서는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시행되던 「여직원 노동보호규정」은 1988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일부 내용은 이미 현실에 부합되지 못하였습니다. 기존의 규정과 비교할 때 이번에 제정된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은 주로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하여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1) 여직원이 종사할 수 없는 노동범위를 부록의 형식으로 조정하였고, (2) 출산휴가기간과 대우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3) 감독관리 및 법률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예컨대, 기존의 규정에 따르면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지만 신규 규정에 의하면 14주, 즉 98일로 연장하였고, 유산하였을 경우 기존의 규정에는 단지 일정한 기간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신규 규정에서는 임신 4개월 미만 이내에 유산하였을 경우 15일, 임신 만 4개월 후 유산하였을 경우 42일 휴가를 부여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